

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 징수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.

3. 주요내용

-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삭제.

4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제30조의2, 제30조의5
-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

5. 검토의견

- 지방세의 체납정리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코자 운영하는 구미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임.
-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사항인 제3조②항중 5호 내용인 “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”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임.
- 지방세법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입 또는 납부의무의 소멸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저촉사항은 없음.